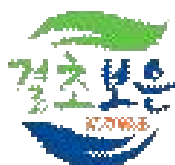


- 귀농 · 귀촌인 유치 정착을 위한 -
2023년도 청년 귀농인 지원사업 추진계획



산 업 경 제 국
농 정 과

2023년도 청년 귀농인 지원사업 추진계획

- ❖ 청년 귀농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소득 및 경영 안정을 통하여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
- ❖ 청년 귀농인의 조기 영농정착 유도과 인구 유입을 통해 농촌 활력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I. 추진근거

- 보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II. 추진방향

- 농촌인력의 노령화 등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라 청년 귀농인의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을 통해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정착 여건 조성

III.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9. ~ 2023. 12. 31.
- 사 업 비 : 44,000천원
- 지원비율
 - 청년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보조 100%
 - 청년 귀농인 농지임차료 지원 : 보조 100%
 - 청년 귀농인 농업창업 지원 : 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분야 : 3개분야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단가	사업비			비고
			합계	군비	자부담	
계	7		44,000	34,000	10,000	
청년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3호	5,000 ~ 7,000	21,000	21,000	-	귀농인
청년 귀농인 농업창업 지원	1호	10,000	20,000	10,000	10,000	귀농인
청년 귀농인 농지임차료 지원	3호	1,000	3,000	3,000	-	귀농인

IV. 사업대상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귀농인을 말함. 이하 ‘귀농인’이라 한다)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을 말함. 이하 ‘재촌비농업인’이라 한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단, **6개월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고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18세 이상 ~ 만40세 미만(1983. 1. 1. 이후, 2005. 12. 31. 이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보은군으로 이주하여 **농지 3,000㎡이상 경작**하거나, 농지면적 3,000㎡이상에 해당하는<별표1>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 기준과 <별표2>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 시설면적 기준을 충족하여 사육하고 있는 자
 - * **재촌 비농업인 중 타지역 거주기간 없이 보은군에서만 거주한자는 신청 제외**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농업창업자금 융자 지원사업은 신청가능)
 - * 가족 중 한명이 먼저 전입하였을 경우에는 최초 전입자를 기준으로 함.(부부의 경우 세대분리로 전입하였을 경우 1인만 신청가능)
 - *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그 기간이 2년 이하인 자 중** 이미 농촌으로 이주한 자는 신청 가능
 - * 상속으로 인해 농지를 소유하여 농지원부를 보유하게 되었으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신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의 경우 영농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농지법 제23조 제1항 7호 가목에 따라 상속으로 1만 제곱미터 초과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한 경우만 해당)

V. 지원자격 및 요건

-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다만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함.
 - * 단, 직업군인, 조선업 고용조정자(2015.1.1.일 이후 퇴직자)가 퇴직 후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 기존의 근무지(거주지)가 농촌지역이라 하더라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북한이탈주민은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업군인 및 조선업 고용조정자의 이주기한은 퇴직일자로부터 만 5년까지이며, 북한이탈주민은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까지로 한다.

- ①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 모두 주민등록등본상 단독세대주도 가능(다만,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가능)
 - * 재촌 비농업인은 이주기한을 적용하지 않음
- ②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재촌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다만,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사업대상자로 신청 가능
 - *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는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의 거주기간 필요
- ③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 등)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교육 수료증 인정기한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함
 - 상기 기관(소속 교육원)에서 직접 실시하는 귀농·영농 교육의 경우 수료증(인정시간)으로 인정
 - 상기 기관에서 위탁·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 농업교육의 경우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등록되어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만 인정
 - * 지자체에서 위탁·공모하는 과정에는 지방공기업교육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귀농교육, 지자체 지정 멘토·멘티 활동, 지자체 귀농투어 참여 등도 포함됨
 - * 다만, 공공기관 등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위탁·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 농업교육의 경우,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된 후 농업교육포털에 등록되고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에 인정
 - * ‘17년 이전의 교육수료 실적 중 농업교육포털에 등록이 안 된 경우에 한하여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수료증 인정
 - * 도시농업법 제10조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와 제11조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에서 추진하는 교육과정은 교육이수 시간으로 인정(도시농업인 농사요령교육과정 40시간,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40시간)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시간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 * (예시) 사이버교육 60시간 참여한 경우, 총 30시간을 교육이수 시간으로 인정
 - * 농촌재능나눔 : 한국농어촌공사(스마일재능뱅크), 1365, 사회복지자원봉사(vms) 발급서
 - * 농촌봉사활동 :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로 인정
 - *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자 :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발급한 일자리참여 확인서로 인정
(교육이수 실적이 인정되는 농촌인력중개센터의 명단은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 www.returnfarm.com 공지사항에 게시)
- 비대면 교육의 경우는 집합교육과 동일하게 참여시간의 100%를 교육시간으로 인정
 - * 실시간으로 교육 시행 및 관리가 가능한 교육에 한해 인정하며, 녹화된 교육을 시청하는 단순 온라인 교육 방식은 비대면 교육으로 불인정
 - * 교육기관은 교육생의 출석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출석여부에 대한 근거자료 보관 필요
 - * 교육기관은 농업교육포털에 등록 시 해당 교육이 비대면 교육인지 여부를 제목에 표시(ex. [비대면]000교육)
 - * 만약 오프라인 교육 중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등 사유로 하나의 교육과정에 오프라인·온라인·비대면 교육이 혼합된 경우 각각 진행된 시간을 제목에 표시하여 농업교육포털에 등록(ex. [오프라인00시간/비대면00시간]000교육, [오프라인00시간/온라인00시간]000교육)
- 귀농자 중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증빙 : 농지원부 보유 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거나 되었던 기록이 있고,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농과계 학교(농고·농대) 졸업자(만 40세 미만 신청자에 한함), 후계농업인은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 농과계 학교(농대)는 표준 분류계열(교육부 제공, 대학알리미 사이트) 정보 상 자연과학계열의 농림·수산계열(해양·수산 관련 학과 제외)
 - * 농과계 학교 졸업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는 졸업일로부터 5년까지만 인정
 - * 과수·축산 등 단기간 판매실적이 나올 수 없는 경우 묘목·가축·농자재 구입 자료(국세청 발행 세금계산서 등 공공기관 및 농·수·축협외 증빙자료만 인정) 제출 가능
- ④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신청일 현재 타 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 * (예시) '20. 7. 15일 신청자의 경우, '15. 7. 16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를 말함
- 읍·면은 농업경영체, 농지원부 등록이력 및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상 농업인 보조금 지원이력 확인, 타 산업분야 사업자 등록과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을 확인

- ⑤ (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신청일 기준)까지만 신청 가능

Ⅵ. 지원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 제79조(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 및 제80조(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등)의 규정에 저촉된 사항이 확인되거나 처분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
- **농막 등 거주 불가능한 곳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정 제외**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근로자)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단, 수산업은 겸업가능)
 -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축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생산물을 활용한 서비스(체험, 판매만 해당되며, 판매의 경우 숙박업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제외하고 주된 사업이 생산 농축산물 원물 또는 가공품의 판매에 국한)를 위한 사업등록은 허용
 - * 단, 보유중인 주택, 시설(축사, 콘크리트·판넬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 부속시설 제외)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전력판매 사업등록 허용. 이 경우, 농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
 - * 본인 명의 또는 본인을 포함한 공동명의로 총 2주택 이하를 소유한 자가 동 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 신청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기 전인 경우 그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 농업 외 연소득의 범위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 규정에 따름
 - * 다만, 사업신청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퇴직자·사업자등록 말소자의 경우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산정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제외하고 산정
- 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
 - *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과정은 신청 가능
 - * 야간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가능

VII. 지원사업분야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유의사항)	비고 (지원계획인원)
청년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5,000천원 : 농지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대가축 6두 이상, 중소가축 15~300두 이상 - 7,000천원 : 농지면적이 6,000㎡ 이상이거나, 대가축 12두 이상, 중소가축 30~600두 이상 ※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과 중복 불가	- 귀농인 3호 - 5,000천원 ~ 7,000천원 내 차등지원
청년 귀농인 농업창업 지원	- 농업용 하우스, 관정·관수 시설 등 사업비 20,000천원 한도 내 지원 ※ 시설의 개보수 지원 불가하며 시공 자재는 신품(정품)을 기준으로 함(중고자재 미지원) ※ 농업용 하우스 시설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 및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함	- 귀농인 1호 - 20,000천원 - 보조50%, 자부담 50%
청년 귀농인 농지임차료 지원	- 2023년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임차료 최대 1,000천원 지원 ※ 2023. 1. 1. 이후 보은군 관내 농지임대차 체결 계약 ※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귀농인 3호 - 1,000천원

VIII. 세부사업 확정

○ 보은군 귀농귀촌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세부사업 확정

- 단, 본 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보은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정분과에서 대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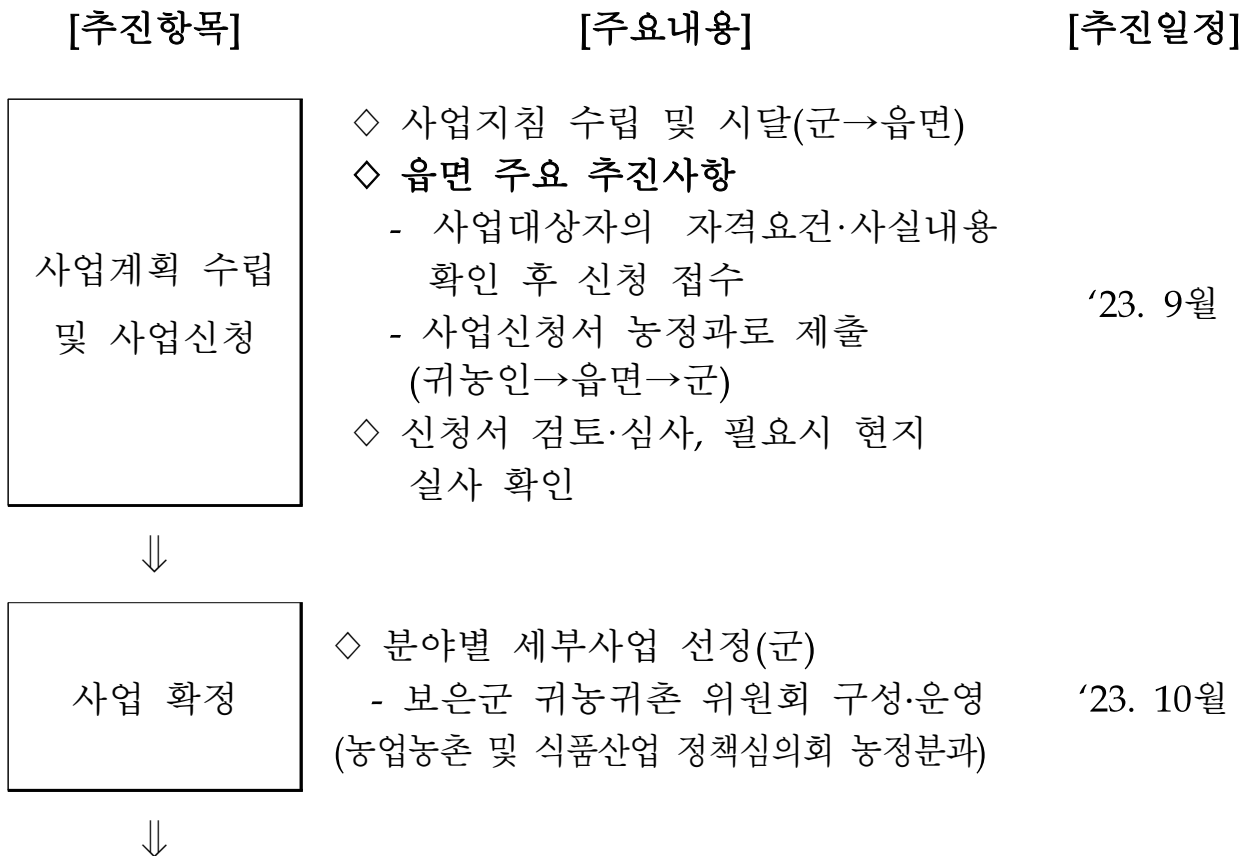
〈 보은군 귀농·귀촌 위원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정분과) 구성·운영 〉

- ▣ 구 성 : 군, 농업기술센터, 농협, 농업경영인회 등 군수가 인정한 자
- ▣ 기 능 : 귀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귀농·귀촌인 지원 대상자 선정,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항, 그 밖에 귀농·귀촌과 관련하여 보은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회 의 : 수시 (필요시 군수가 수시 개최)

IX. 사업추진 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사업 시행	◇ 보조금 교부결정(군→읍면) ◇ 세부사업 추진(귀농인→읍면→군) ◇ 상·하반기 추진상황 지도 점검	'23. 10월~11월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추진 및 정산 보고 (귀농인→읍면→군)	사업완료시 ~ '23. 12월
↓		
사후관리	◇ 사후관리책임자 지정·관리 - 사후관리대장 기록 비치(읍면)	'24. 1월~

X. 세부추진요령 및 사후관리

1. 사업추진요령

○ 사업신청

- ▶ 신청기한 : 2023. 9. 22.(금)까지
-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신청 서류 : 신청서[별지 제2호 및 제2-1호 서식], 각 부, 신청자 심사기준표 첨부

○ 신청 시 주의사항(※유의사항 참고)

- ▶ 읍·면에서는 자격요건을 철저히 확인 후 신청
- ▶ 대상자가 지원받을 사업만 신청하도록 안내
- ▶ 사업선정 후 당해년도에 청구하지 않은 사업은 다음연도 연장불가

2. 사업시행

○ 읍·면장은 1차 검토하여 농정과로 제출 : 2023. 9. 26.(화)까지

- ▶ 사업신청자의 대상자격 요건 확인
- ▶ 사업신청서 내용의 사실여부 현지 확인
- ▶ 허위부당 신청이 의심되는 경우 현지조사 실시

○ 농정과에서 2차 검토 심사 후 보은군 귀농귀촌 위원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농정분과)를 거쳐 대상자 선정

- ▶ 사업신청서의 부실, 허위, 부당하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읍·면 업무담당자에게 공문, 전화 등을 통해 통보하여 보완조치 후 현지 확인하여 사업신청서 사실여부를 확인
- 보조금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해 시행, 보상공금은 대상자 확정 통보로 시행
-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대상자 포함)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별 선정기준에 맞는 범위 내에서 군수의 변경승인을 받은 후 사업 추진
- **사업비는 우선 자부담으로 집행하고,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청구**
- 읍면에서는 보조금 청구 시 현지 확인 및 사업비 집행내역(각종 증빙자료)을 면밀히 검토 후 제출
-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되, 사업 목적에 맞게 보상공금으로 집행하고 정산할 수 있음
- 청년 귀농인 정착자금(보상공금)은 보은군에 전입한 후 정착하여 실제 거주한 것과 앞으로 계속 영농할 것을 “실제 영농종사 확인서”로 같음하고 보상공금 지급
- 청년 귀농인 농업창업 지원(보조금)은 사업비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 인건비 지급내역, 하자보수 증권, 준공사진 등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청년 귀농인 농지 임차료(보상공금)은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한 농지를 농업경영체 및 농지대장에 등재하고 당해 연도에 계약한 계약서 첨부하여 보상공금 청구.

3. 사업시행

-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및 정산하고,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 보조금 및 보상공금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 : 지원년도부터 5년
- 사후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지원대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1부는 읍면에, 1부는 군에 보관
- 보조사업자 선정 후 포기자는 향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외)

- ▶ 사업장을 이탈한 때
- ▶ 타지역으로 이주(전출)할 때
- ▶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 ▶ 당초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및 유용한 때
- ▶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 ▶ 공공기관 및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할 때
- ▶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할 때
-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 ▶ 기타 군수가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 사후관리 총괄 책임자 : 군수

- ▶ 시설, 장비, 기기 등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 사후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
- ▶ 사후관리대장 기록 비치 : 연 1회 이상 점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재산 관리

- ▶ 사후관리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기간 준수
- ▶ 처분제한기준 : 사후관리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해야 할 경우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실시
- ▶ 사업대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시설 및 장비를 관리 활용하여야 함(사후관리 5년)
- ▶ 사망, 질병, 사업 포기 등 불가피하게 사업을 포기할 시 군수에게 신청하여 군수의 승인 후 관리전환을 할 수 있음
- ▶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장 사후관리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따라 지원된 농식품사업자금(보조+융자)이 3천만원 미만인 시설등에 대하여는 읍·면장이 사후관리
-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이 본래의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되도록 읍면장은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철저(관리카드 작성 및 비치-연 1회 이상 사업장 점검실시)
- ▶ 중요재산의 사후관리(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관련)

○ 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2023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준용함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 농식품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 한 대상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 부동산의 종물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지열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부동산과 그 종물을 같이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부동산의 종물만 지원받은 경우 별표 3에 따른 스티커형 표지를 반드시 부착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 농기계 등(트랙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4. 행정사항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는 본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지원적격 청년 귀농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철저
 - ▶ 신청서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신청내역 확인 철저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제출(별지2호 서식, 신청자 심사기준표 포함)
 - (읍·면→군) : 2023. 9. 26.까지
- 사업대상자 선정 (군→읍·면) : 2022. 10월 중
- 사업 추진 (보조사업자→읍·면→군) : 2022. 9월 ~ 10월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보조사업자→읍·면→군) : 사업완료 후 즉시

붙임 1. 「별표 1」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기준 1부.

2. 「별표 2」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시설면적기준 1부.

[별표 1]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기준(제3조제1항제1호관련)

※ 농지면적 3,000㎡에 해당하는 가축 사육면적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 말, 노새, 당나귀	6마리 이상
	착유우	3마리 이상
중가축	돼지	30마리 이상
	면양, 염소, 개, 오소리	60마리 이상
	사슴	15마리 이상
소가축	토끼, 뉴트리아	300마리 이상
가금	육용(닭, 메추리, 꿩)	3,000마리 이상
	산란용(닭, 메추리, 꿩)	1,500마리 이상
	기타(오리, 칠면조, 거위, 타조)	600마리 이상
기타	꿀벌	30군 이상

비고 : 1. 돼지의 경우에는 젓 먹는 새끼돼지를 제외하고, 「한국진도개보호 육성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개의 경우에는 그 사육기준을 6마리로 한다.

2. 기타 가금 및 조류 중 타조는 그 사육기준을 60마리로 한다.

[별표 2]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시설면적기준(제3조제1항제1호관련)

가축사육종류	가축사육시설면적
대(大)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
중(中)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소(小)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25제곱미터를 초과
가금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
기타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